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해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844

발의연월일: 2024. 7. 17.

발 의 자:이해식・김성환・박홍배

이기헌 • 박정현 • 서영석

서영교 · 조정식 · 박상혁

정을호 · 김태선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

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 정본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, 그 등본을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. 이어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,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.

그러나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장의 경우 직무정지를 피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가 본회의 가결되기 이전에 사퇴를 반복적으로 하며 국회의 합법적인 견제를 무력화 시키고 있음.

이에 대통령을 제외한 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발의가 재적의원 과반 수 이상의 발의로 이루어진 경우 소추대상자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 며, 임명권자로 하여금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30조제3항 신설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탄핵소추안(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제외한다) 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이루어진 경우 소추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며, 임명 권자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수 없다.
- 1. 탄핵심판이 있을 때
- 2. 탄핵소추안이 부결ㆍ폐기 또는 철회된 때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130조(탄핵소추의 발의) ①・② | 제130조(탄핵소추의 발의) ①・② |
| (생 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<u> <신 설></u> | ③ 제1항에 따른 탄핵소추안 |
| | (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|
| | 제외한다)이 재적의원 과반수 |
| | 의 발의로 이루어진 경우 소추 |
| |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|
| | 하나에 해당하는 때까지 그 권 |
| | 한 행사가 정지되며, 임명권자 |
| | 는 소추대상자의 사직원을 접 |
| | 수하거나 소추대상자를 해임할 |
| | <u>수 없다.</u> |
| | 1. 탄핵심판이 있을 때 |
| | 2. 탄핵소추안이 부결·폐기 또 |
| | 는 철회된 때 |
| <u>③</u> (생 략) | 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 |